

「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1월 3일

강 원 도 지 사

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농·어업과 농·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하는 농·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(안 제1조 ~ 제4조) 조례의 목적, 정의,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
 -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증진
- (안 제5조 ~ 제6조)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
 - 지급 대상의 자격 요건과 지급 제외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
- (안 제7조)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
 - 지급액의 결정과 수당의 지급 수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- (안 제8조 ~ 제9조) 지급신청 및 제외대상자의 이의신청 에 관한 사항
 - 지급 신청 방법과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조사 가능토록 규정함
- (안 제10조)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 - 지급 중단 및 중지, 지급된 수당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3. 의견제출

- 이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(참조 : 농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 - 제출자의 성명(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 - 기타 참고사항

《의견제출 및 문의처》

- 주 소 : (우)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농정과
- 전 화 : 033-249-2649
- 팩 스 : 033-249-4040
- 이메일 : hdw22@korea.kr

4. 참고사항

-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(안) : 붙임 참조

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어업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.
2. “농어촌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.
3. “농어업인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
 - 나.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
 - 다.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
4. “농어업경영체”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.
5. “청년농어업인”이란 「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제2조제3호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.
6. “공익적 기능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.

7. “농어업인 수당”이란 농어업·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·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강원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농어업인 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(수급자의 책무)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·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, 이와 관련되어 강원도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한다.

제5조(지급 대상) ①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.

1.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3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
2.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

제6조(농어업인 수당 지급 제외대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
1.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
2.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
3. 신청 전년도에 「농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,

「수산업법」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

4. 그 밖에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

제7조(지급액 및 지급방법) 농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되,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지급 신청 및 확인) ①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(이하 “신청인”)은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·면·동장, 시장·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·군수는 지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
1. 신청인의 재산, 소득, 실제 영농 여부, 실거주 여부, 가족 현황
2.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

제9조(이의신청)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·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지급 중지 등) ① 농어업인 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.

1. 지급 대상자가 사망, 전출, 주민등록말소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
2. 지급 대상자가 강원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

3.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

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
② 시장·군수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업인 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수급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2조(권한의 위임)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13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